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2월 23일(수)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유튜브 라이브** (동물권행동 카라 | 이원욱 TV)

주최·주관

동물권행동 **카라** | 이원욱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5분	진행 안내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0분	인사말	
20분	<발제>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최근 사례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최민경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행동 팀장)	사회자
50분	<토론> • 좌장 :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 토론 : 김미정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팀장) 박미랑 (한남대학교 경찰학전공 교수) 이상경 (서울경찰청 프로파일러)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주현경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분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목차

[환영사]	4

[발제]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최근 사례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최민경(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행동팀 팀장)	7

[토론자] 동물학대 행위 앞의 피해자로서 동물, 피해자로서 인간 박미랑(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29
온라인 동물학대의 범행동기적 특성에 따른 사이버 공간 관리의 필요성 이상경(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프로파일러)	35
동물과 사람에게 가하는 가장 저열한 폭력, 온라인 동물학대 엄벌과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전진경(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39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예방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문 주현경(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3

환영사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전진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기 화성을 국회의원 이원욱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물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던 이전의 태도에서 우리 사회가 변화해가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고질적인 동물학대의 대표적 사례인 개식용 문제 또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발족되어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시민들의 동물보호 의식 향상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동물학대를 약자에 대한 폭력으로 인식하여 사회정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학대자를 처벌하고 예방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거리의 유기동물이나 길고양이들을 구조하고 돌보며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자를 연민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는 가장 소중한 구성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선량한 시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좌절하며 심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익명성 뒤에 숨어 최약자인 동물, 특히 보호자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길고양이들을 학대하며 저열한 쾌감을 느끼고, 이를 가슴아파하는 사람들의 고통마저 즐기는 학대자들 때문입니다. 이들의 범죄 행위는 인터넷망의 속도만큼 그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더하여 아이피 변조 등 기술을 이용해 잡히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에 공공연히 경찰까지 조롱하고 대담하게 추가 범죄를 예고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 인간에 대한 온정주의, 수사력의 부재 등으로 실망한 시민들은, 이제 범인을 잡을 수도 없고 잡아봐야 처벌도 미약하다며 답답한 마음을 호소해 옵니다.

학대자를 잡아 엄벌해 달라며 청와대 청원을 한 5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회는 우리 인간들에게도 위험합니다. 학대자의 뒷에 배가 고파 들어갔다 잡혀 영문도 모른 채 칼에 찔리고 산채로 불태워지며 고통에 몸부림쳐야했던 무고한 동물의 고통을 외면하고서는 정의로운 사회는 결코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이원욱 의원실과 동물권행동 카라의 온라인 동물학대 제어를 위한 토론회는 어둡고 긴 터널에서 발견한 출구와도 같습니다. 저열한 동물학대는 물론 동물을 연민하는 선량한 시민들의 마음에 상처와 분노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는 선처 없는 단호하고 효과적인 대응과 응징이 필요합니다. 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들이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 전 법에 따라 색출해 엄벌해야 하고 아예 인터넷상에 발도 들일 수 없게 만듦으로써 동일한 행위를 예방해야 합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팽배한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를 강하게 제어하기 위한 초석을 놓아, 죄 없는 동물을 사악한 손길로부터 보호하고 책임을 방기하여 학대를 방조한 통신망 제공자도 학대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의안을 발의해 주신 이원욱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좌장으로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동물권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우희종 교수님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해 주실 이상경 프로파일러님 그리고 법학과 범죄학적 측면에서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제어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실 주현경, 박미랑 두 분의 교수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가슴 아픈 범죄 현장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투하는 동물권행동 카라의 자랑스러운 활동가들에게 신뢰와 격려를 보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전진경



안녕하십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기 화성을 국회의원 이원욱입니다.

핵가족화 및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양육인구 역시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020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에 처음으로 반려동물이 포함되었고,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약 312만9천 가구, 전체 가구의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반려동물은 공존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도 활발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동물을 상대로 하는 잔혹한 학대와 범죄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행위는 오프라인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기도 했습니다. 동물학대 촬영물 등을 유포한 동물판 n번방 사건은 연루된 이들 중에 미성년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파장을 남겼습니다. 이에 이러한 동물학대 영상물이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동물학대 범죄가 향후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FBI가 동물을 대상으로 행하는 범죄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여 동물 학대법을 관리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동물을 단순히 소유하는 물건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교육에서부터 생명체를 보호하려는 마음, 그리고 모든 생명에 대한 건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토론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자와 온라인으로 함께해주신 모든 참여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 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기 화성을 국회의원 이원욱



발제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최근 사례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최민경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행동팀 | 팀장

1.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의 증가

동물학대 범죄는 디지털 매체의 발달에 따라 각종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채팅 어플 등을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2020년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2,055명이 참여한 <미디어 동물학대 설문조사> 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동물학대 영상을 본적이 있다고 답했다. 학대 유형은 ‘비정상적 돌봄’ 45% ‘신체적·물리적 폭력’ 20%, ‘언어적·정신적 폭력’ 16%, ‘동물을 산채로 먹거나 사체를 촬영하는 등 자극적 행위’ 15%, ‘성폭력’ 4% 로 나타난 바 있다.

2.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최근 사례

1)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사건

2021년 1월 ‘고어전문방’ 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참여자들 수십 명이 고양이, 토끼, 너구리 등 다양한 동물들을 직접 살해하는 과정을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공유하고, 각종 살해 도구 및 자세한 방법까지 공개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살아있는 고양이에게 화살을 쏘서 허리를 관통시킨 후 고통스러워하는 고양이의 사진을 올리고 자랑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는 사진과 영상도 수시로 공유되었다.

동물 학대와 채팅방 참여자 자신의 몸에 자해를 가하는 행위를 넘어서 “사람 손을 드릴로 관통해 보고 싶다”, “강간해보고 싶다” 등 수위 높은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 채팅방 내용 전반에서 생명 자체를 경시하는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참여자들끼리 서로의 폭력성을 부추기고 해외 다크웹을 통해 실제 사람을 참수하는 영상들까지 주고받는 등 점차 더 큰 자극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당시 해당 채팅방 참여자들의 업벌을 추구하고자 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만 275,492명이 참여했으며, 동물권행동 카라 및 동물단체의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은 채팅방 참여자 중 80여 명을 조사하였다. 충격적인 것은 고어전문방 참여자들 중에 미성년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3인 중에 1인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이다.

혐의가 인정된 성인 2인 중 1인은 채팅방의 방장이었던 인물로 최종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행동대장 역할을 하며 다수의 동물을 살해하고 참수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이 모씨는 검사의 징역 3년 형(현행 동물보호법 상 법정 최고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2021 디시인사이드 새끼 고양이 학대 사건

‘고어전문방’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2021년 7월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새끼고양이 두 마리를 무단 포획하여 가둬두고 다양한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며 고양이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을 일기처럼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게시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게시자는 고양이들을 때리거나 물에 빠트리려는 자신의 행위를 ‘놀이’라고 지칭하였고 이 게시물을 지켜보던 다른 이용자들은 “테이프 바닥에 묶어놓고 채찍질”을 하라거나 “다리를 부러트리거나 잘라봐” 등 추가 학대 행위를 권장하고 방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해당 사건의 잔혹함에 분노한 시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하였다. 무려 250,559명이 청원에 참여하였으며 동물권행동 카라에서는 해당 사건을 고발 조치하였으나, 경찰의 압수영장 집행 결과 디시인사이드 측으로부터 인적 사항 특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결국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없어 수사 중지가 결정되었다.

이후로도 디시인사이드 및 온라인 채팅방에서는 여전히 고양이를 혐오하는 게시글이나 학대를 조장하는 글이 꾸준히 게시되었다. 겉으로 보았을 때 고양이가 학대로 사망한 것을 알아보기 어렵게 하기 위해 ‘타이레놀’을 먹이에 섞어 급여하여 간 손상으로 고양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포획틀을 직접 구입해 중성화를 진행하는 척하며 고양이들을 잡아서 물뿌리기 등의 방법으로 괴롭히거나 원서식지로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곳에 무단 방사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등, 수사망과 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기법들은 디시인사이드 및 채팅방 등의 매체를 통해 더욱 발전되었다.

3) 2022 디시인사이드 고양이 방화 학대 사건

2022년 1월, 평소에도 동물학대를 조장하는 글들이 다수 게시되던 디시인사이드의 한 갤러리에 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둬두고 산 채로 불태우는 영상이 게시되었다. 댓글을 통해서 고양이를 산 채로 불태우기 이전에 칼로 찌른 행위도 있었음을 스스로 알리기도 했다.

게시글은 얼마 후 게시자에 의해 직접 삭제되었고, 게시글 삭제 이후에 자신의 영상이 다른 이들에게 도용되는 것을 불쾌해하며 영상 원본을 촬영하고 소유한 것이 본인임을 인증하는 글을 추가로 게재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게시한 영상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 시작하자 “더 많은 털

바퀴를 잡아 태워버리겠다” 혹은 “청원 동의 개수만큼 번포표 매겨가며 태워버리겠다” 등의 협박성 글을 게시하며 추가 범행을 예고하고 사람들의 심리를 압박했다. (※털바퀴: 털이 달린 바퀴벌레라는 의미로 고양이를 혐오하는 표현으로 사용됨)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15만 명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VPN 테스트’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해당 글은 IP 우회 접속을 통해 작성되어 게시자를 찾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게시자는 “사람 문제 해결하기도 바쁘는데 경찰이 해주겠냐” “잡아봐라”라며 시민단체와 수사기관을 보란 듯이 조롱하며 자신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보였다.

영상이 게시된 지 17일 만에 범영상분석연구소를 통해 영상 원본의 촬영 일시, 장소, 범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으며 현재 경찰에서는 범인을 찾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3.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의 특징 및 문제점

1) 특징

- ① **익명성:** 대부분의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는 유튜브, 디시인사이드 등 익명으로 활동 가능한 매체를 기반으로 주로 시작되고 유포된다.
- ② **통제성:** 자신이 게시한 학대 사진 및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충격받거나 고통스러워하는 등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 만족스러워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이 자신의 범죄에 동조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 ③ **과시욕:** 자신이 게시한 학대 사진이나 영상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관심을 두고 지켜보며 댓글이나 추가 게시글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사진이나 영상 속 학대 행위가 자신이 직접 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하며, 자신은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자기 과시적 모습을 보인다.
- ④ **정당화:** 고양이를 ‘털바퀴’ ‘털레반’ 등으로 부름으로써 해충과 비슷한 존재이므로 괴롭히거나 죽여도 괜찮다는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학대 행위가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⑤ **계획성:** 동물을 학대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거나, 학대 대상을 사전에 물색하고 직접 찾아다니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한다.

- ⑥ **지속성:** 일반적으로 범행이 일회적 행동에 그치지 않고 대상을 옮겨가며 학대를 지속하며 이러한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린다.

2) 문제점

- ① **공개성:** 디지털 매체 특성상 대체로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 가능하여 미성년자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가 폭력적인 동물 학대 사진이나 영상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 국민 정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큰 것은 물론 어린이나 미성년자의 경우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 ② **확산성:** 폭력적 표현, 가학적 학대 사진 및 영상이 캡처나 다운로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장과 재유포가 가능하여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재 유포 되어 통제에 어려움이 따른다.
- ③ **모방 범죄:** 학대의 구체적 방법 및 상세한 과정이 공개적으로 공유됨에 따라 모방 범죄의 우려가 크다.
- ④ **폭력의 희화화:** 산 채로 불이 붙어서 괴로워하는 고양이를 ‘타닥이, 화특이’ 등으로 부르거나 동물에게 끓는 물을 붓는 행위를 ‘온천’이라고 부르는 등 가학적인 폭력 행위를 마치 놀이나 게임의 일부인 것처럼 표현하여 약자에 대한 폭력을 가볍게 여기도록 조장한다.
- ⑤ **관련 규제 미비:**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가 급속도로 늘고 있으며 그 수법도 점점 진화하고 있지만 동물학대 관련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⑥ **수사 체계 미비:** 국내에는 동물학대 범죄 전담팀이 없는 관계로 수사 주체가 불분명하다. 일반적으로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경험이나 배경 지식이 많지 않은 지능 팀, 경제 팀 등에 사건이 배정된다. 동물학대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수사와 빠른 검거가 추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지만 수사의 전문성과 체계의 미비로 피의자 특정에도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 ⑦ **기술적 한계:** 온라인상에서 동물학대 사진이나 영상을 발견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IP 추적 등을 통한 범인 특정 및 검거에 기술적 제약이 많고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 게시자가 이용한 플랫폼이 해외 기

반 회사의 프로그램인 경우 경찰에서 수사협조를 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4. 개선 방안

1) 사전 예방

- **관련 규제 마련:** 동물보호법 제8조 제5항 제1호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는 없는 상태이다.

디시인사이드 고양이 방화 학대 사건의 경우 처음 학대 글이 게시된 오후 3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해당 게시글은 어떠한 조치도 되지 않은 채 내내 공개적으로 온라인상에 게시되어 있었으며, 이후 게시자가 스스로 글을 삭제하였다.

현행 동물보호법도 강화될 필요성이 있으며, 무엇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제가 필수적이다.

2021년 6월 30일 이원욱 의원 대표 발의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유통방지 대상 정보로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학대에 대항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추가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어 조속한 통과와 시행이 필요하다.

- **동물학대 예방 교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의 경우 참여자 다수가 미성년자였으며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의 경우 연령대와 관계없이 누구든 학대 사진이나 영상에 노출될 수 있고 직접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린 나이일 때부터 생명 감수성 교육에 바탕을 둔 동물학대 예방교육이 성장과정 전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교육과정이 공교육 내에서 의무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거시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검거 방안 마련

- **사이버 범죄 지정:** 현재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는 경찰청에서 지정하는 사이버 범

죄 분류에 해당하지 않아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신고 대상이 아니며, 사이버수사팀 수사 사건으로 배정되지 않는다. 2021년도까지만 해도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동물학대 사건을 신고하면 접수 안내와 함께 동물학대 사건은 시민단체에 연락하라는 안내 문자를 경찰청에서 전송해오기도 했다.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의 경우 IP 추적이나 영상 정보 분석 등을 위해 수사에 전문 기술이 필요한 만큼 사이버 범죄 지정을 통해 전문적으로 수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동물경찰제도 도입:** 수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 내부에 동물학대 범죄 전담 팀 신설 혹은 자치경찰화된 동물경찰 도입이 필요하다. 영국, 미국,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동물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 엄격한 처벌

- **양형기준 마련:** 동물학대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참여자 20만 명을 넘을 때마다 정부의 단골 답변 중의 하나는 ‘양형기준 마련’이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동물대상 범죄는 어렵게 가해자를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해도 소유주의 유·무나 생명권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차이에 따라 복불복으로 처벌이 내려진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판부에서 일관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양형기준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한다.

5. 맺음말

동물에 대한 폭력이 용인되는 사회는 그만큼 약자에 대한 억압과 폭력이 만연해 있는 사회라는 증거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학대 내용은 매체의 특성상 쉽고 빠르게 확산된다. 동물학대는 폭력성을 약자에게 표출하며 그 과정에서 대상의 고통을 즐기는 반사회적 범죄이다. 인간과 비인간 동물 모두가 안전한 사회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원인 분석 및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최근 사례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동물권행동 카라
최민경 활동가

목차

- I 2021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사건
- II 2021 디시인사이드 새끼 고양이 학대 사건
- III 2022 디시인사이드 고양이 방화 학대 사건
- IV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의 특징 및 문제점
- v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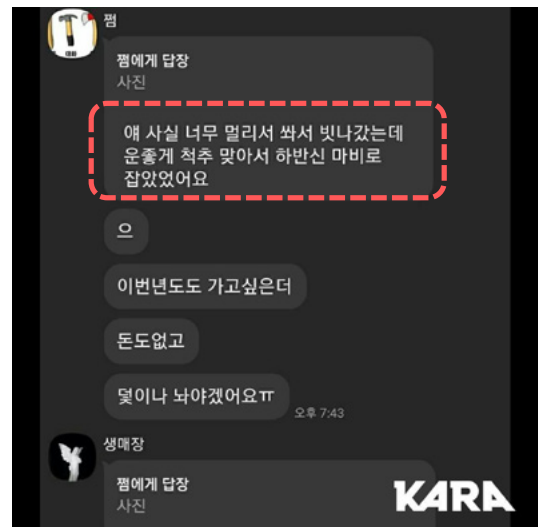
2021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사건



2021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사건

KA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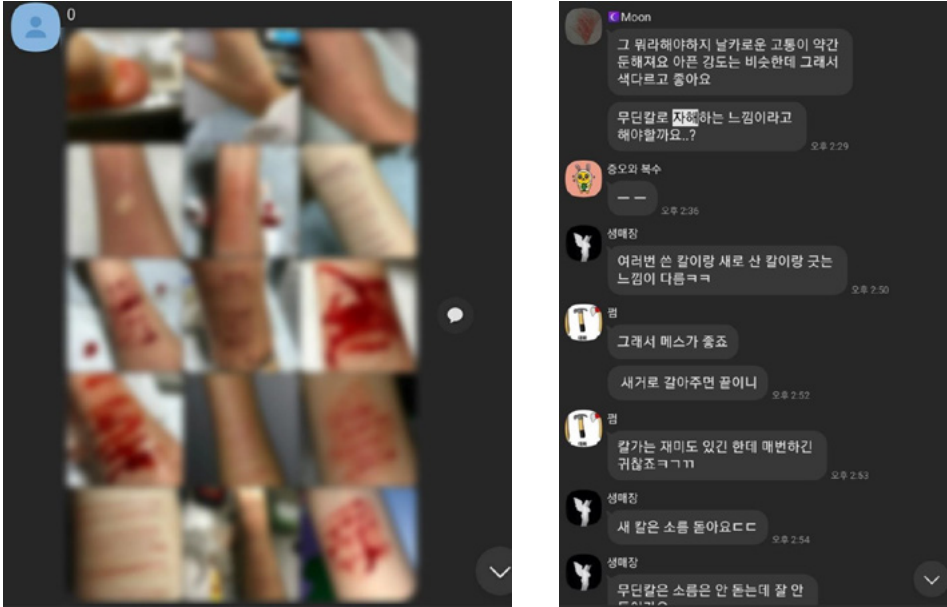
- 동물들을 직접 살해하는 과정을 상세히 촬영한 사진 및 영상 공유
- 동물 살해 도구 및 방법에 대한 정보 공유
- 미성년자 다수 참여 → 검찰에 송치된 3인 중에 1명은 미성년자



2021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사건

KA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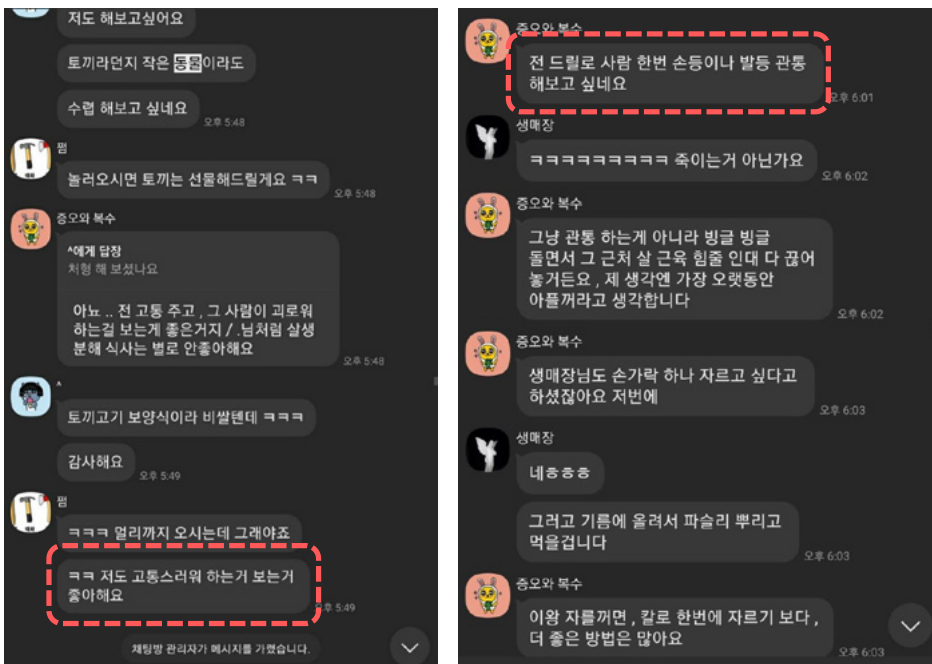
- 동물학대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 자해를 하거나 자해 관련 사진과 영상을 상세히 공유함
- 자해 행위를 서로 부추기거나 고통을 자세히 묘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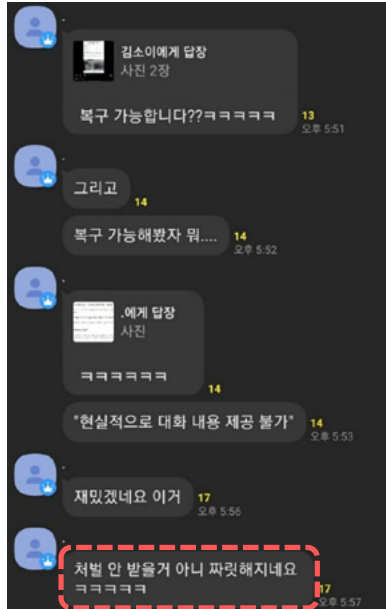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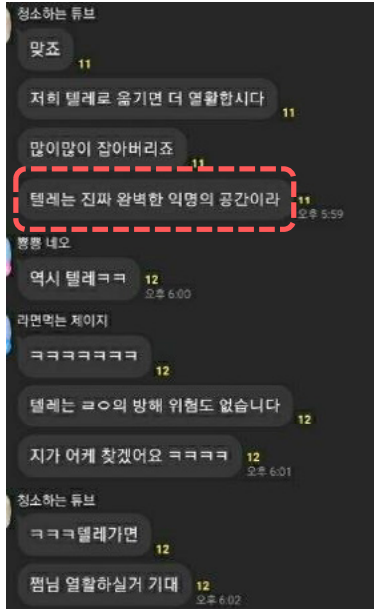
2021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사건

KARA

- 생명 자체를 경시하거나 사람에게 대한 폭력성도 드러내는 대화가 자주 등장함



-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처벌 받지 않을 것 이라고 자신함
- 텔레그램 등 새로운 플랫폼을 이용한 추가 범죄 모의



청와대 국민청원

275,492명

재판부 탄원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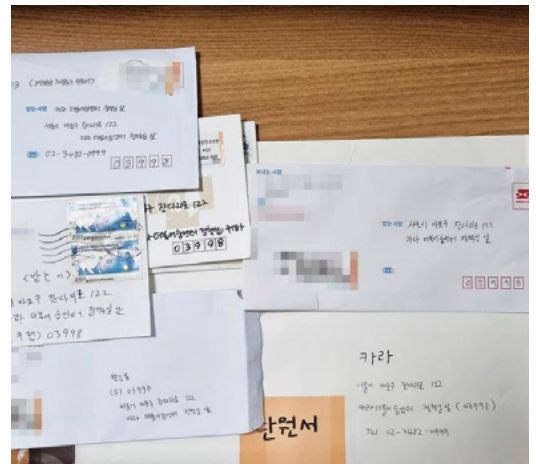
10,700명 (수기탄원 33명)

처벌 결과

채팅방 참여자 미성년자 송 모씨 소년보호사건 가정법원 송치

채팅방 방장 조 모씨 벌금 300만원

채팅방 활동대장 이 모씨 벌금 100만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 2021 디시인사이드 새끼 고양이 학대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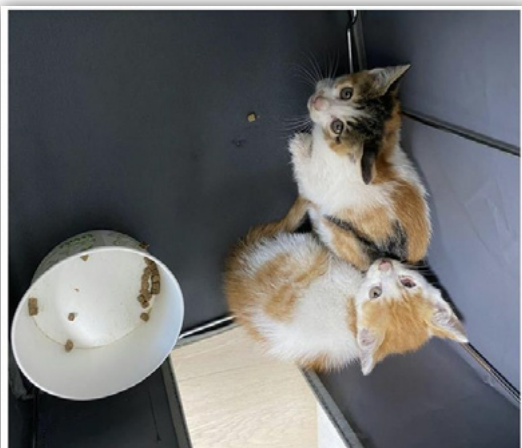


KARA

|| 2021 디시인사이드 새끼 고양이 학대 사건

KARA

- 새끼 고양이 두 마리를 길에서 잡아옴
- 3일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며 죽어가는 과정을 게시판에 공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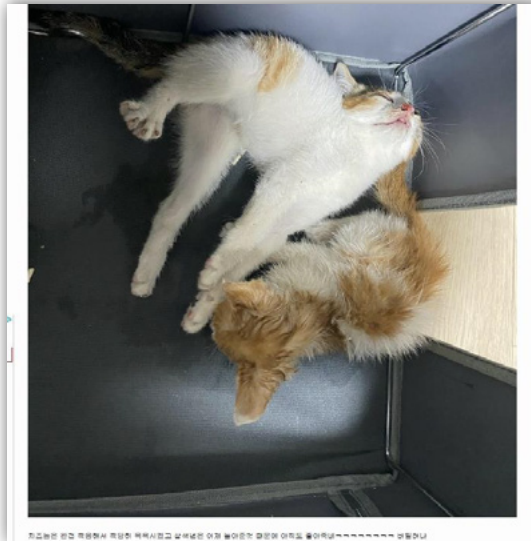
당에 물어서 죽고나서 안죽고 잘 안먹어서
근데 삼백만원 정도도 기부 하려했다고. 저 냥때보다 훨씬한듯

“맞아도 자꾸 하악질 하고...”

“대충 가지고 놀다가 5만원에 팔아 먹어야지”

|| 2021 디시인사이드 새끼 고양이 학대 사건

- 괴롭히는 행위를 '놀아줬다' 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행위와 고양이들의 상태를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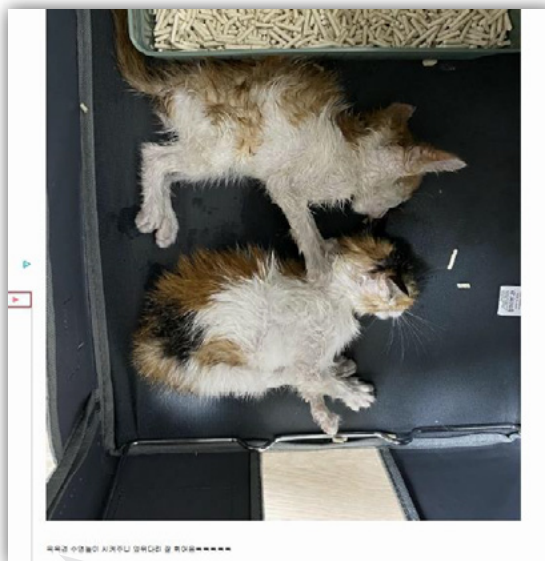
"...삼색X은 어제 놀아준 것 때문에 좋아죽네"



"멍청하게 하악질하다 저 꼴 남..."

|| 2021 디시인사이드 새끼 고양이 학대 사건

- 물에 젖은 채 몸을 가누지 못하는 고양이들 사진을 올리고 다양한 '놀이' 때문이라고 표현함



"목욕 겸 수영놀이 시켜주니..."



"풍차놀이, 수영놀이, 즐넴기 체험시켜줌..."

2022 디시인사이드 고양이 방화 학대 사건

KARA

2022 디시인사이드 고양이 방화 학대 사건

KARA

- 22년 1월 28일 'VPN 테스트' 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됨
- 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둬두고 산 채로 불태우는 영상이 첨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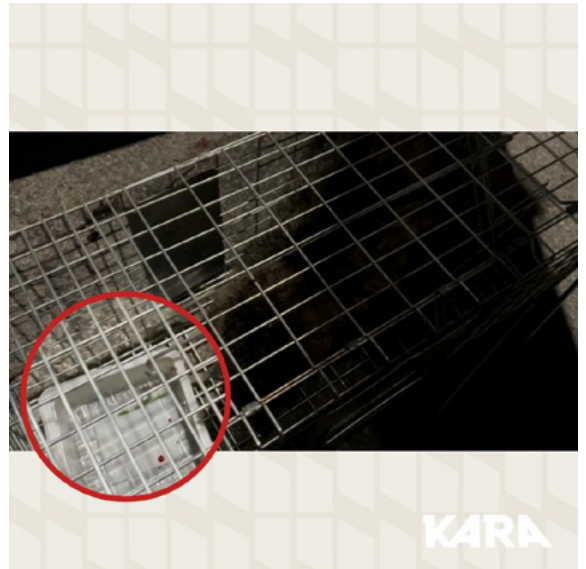
VPN 테스트

○○(156.146) | 2022.01.28 15:06

조회수 923 | 추천 11 | 댓글 43



- 고양이를 산 채로 불 태우기 전에 고양이가 계속 울어서 칼로 몇 번 찔렀다고 설명함
- 실제 고양이 몸에 불 붙이기 이전부터 피를 흘린 흔적이 영상에서 관찰됨



청와대 국민청원

165,544명 (22년 2월 16일 기준)

수사 결과

강남 경찰서에서 사건 수사 중

문제의 글 게시 17일 만에 법영상분석연구소 황민구 소장을 통해 고양이를 산 채로 불태운 영상의 촬영 일시, 장소, 범행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됨

IV 온라인 동물학대 범주의 특징 및 문제점

KARA

재네나 절대못잡음

일단 재네 할줄아는게 해쥬해쥬 이근데 경찰이 해주겠냐?

사람 뒤져가는거 해결하기도 바쁜게 경찰이다..

그리고 일반 VPN이 아니다..

네트워크쪽 나도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CCNP까지 있을 정도로
알건다 안다.

지구에는 아스가르드보다 더 빠르고 안전한곳도 있다.

카라 이 악마 씬년들아 잡아봐라.

다음 축제는 내일이다.



KARA

익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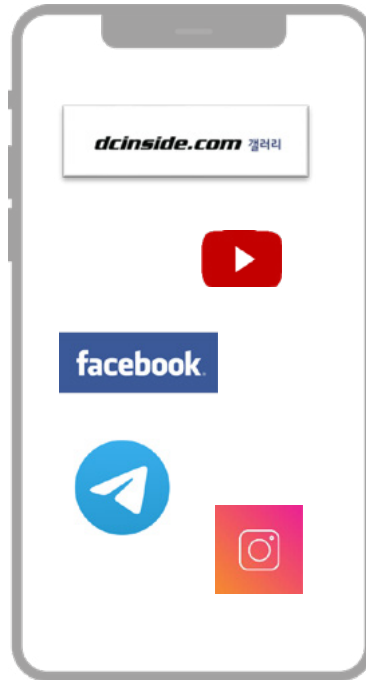
익명으로 활동 가능한 매체를 기반으로 학대 행위가 주로 나타남

통제성

자신의 학대 게시물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거나 동조하게 함

과시욕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질문 및 반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이라는 사실을 과시하거나, 자신은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정당화

고양이를 '털바퀴' 등으로 부름으로써 해충과 비슷한 존재이므로 괴롭히거나 죽여도 괜찮다는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학대 행위가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계획성

학대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거나 학대할 동물을 직접 찾아 다니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함

지속성

대상을 옮겨가며 학대를 지속함



공개성 디지털 매체 특성상 누구나 접근 가능하여 미성년자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가 학대 내용에 무방비 상대로 노출됨

확산성 폭력적 표현, 가학적 학대 사진 및 영상이 빠른 시간 안에 재 유포됨

모방 범죄 학대의 구체적 방법 및 상세한 과정이 공개적으로 공유됨에 따라 모방 범죄의 우려가 큼

폭력의 희화화 산 채로 불이 붙어서 괴로워 하는 고양이를 '타딕이, 화락이' 등으로 부르거나 동물에게 끓는 물을 붓는 행위를 '온선' 이라고 부르는 등 폭력적 행위를 가볍게 여기도록 조장함

관련 규제 미비 동물 학대 관련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없음

수사 체계 미비 국내 동물학대 범죄 전담 팀이 없는 관계로 수사 주체가 불분명 함 (일반적으로 경찰 내부 지능 팀, 경제 팀 등에 사건이 배정됨)

기술적 한계 IP 추적 등을 통한 범인 특정 및 검거에 제약이 많고 시일이 많이 소요됨



IV 개선 방안



IV 개선방안 _ 사전 예방

KARA

관련규제 마련

니시인사이드 고양이 방화사건의 경우 처음 학대 글이 게시된 **오후 3시부터 새벽 1시까지** 어떠한 조치도 되지 않은 채 내내 공개적으로 게시되어 있었으며, 이후 게시자가 스스로 글을 삭제함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의 유통방지 대상 정보로 동물학대에 대항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추가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음

※ 21. 6. 30. 이원욱 의원 대표 발의

동물보호법 제8조 제5항 제1호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는 없는 상태

동물학대 예방 교육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의 경우 연령대와 관계없이 누구든 학대 사진이나 영상에 노출될 수 있고 직접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음. 어린 나이일 때부터 생명 감수성 교육에 바탕을 둔 동물학대 예방교육이 성장과정 전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교육과정이 공교육 내에서 의무적으로 정착되어야 함

사이버 범죄 지정

현재 동물학대 범죄는 경찰청에서 지정하는 사이버 범죄 분류에 해당하지 않아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신고 대상이 아니며, 사이버수사팀 수사 사건으로 배정되지 않음



동물경찰제도 도입

동물 대상 범죄에 대한 배경지식이나 수사 경험이 전혀 없는 지능팀, 경제팀에서 사건 수사를 주로 전담함
 경찰 내부에 동물학대 범죄 전담 팀 신설 혹은 자치경찰화된 동물경찰 도입 필요
 ※ 영국, 미국, 네덜란드에서는 각국의 상황에 맞는 동물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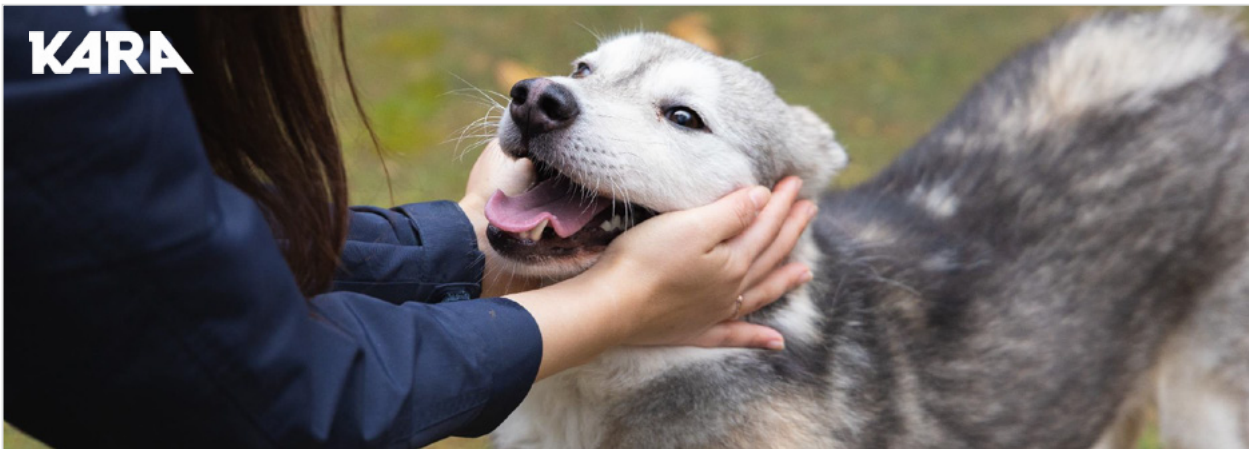


양형기준 마련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판부에서 일관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함



KARA



동물학대는
폭력성을 약자에게 표출하며
 그 과정에서 대상의 고통을 즐기는 **반사회적 범죄**이므로
 인간과 비인간 동물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치와 예방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Korea Animal Rights Advocates

동물학대 행위 앞의 피해자로서 동물, 피해자로서 인간

박미랑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 교수

1. 들어가기

동물학대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금지된 행위이다. 동물보호법이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이 제시하는 학대 행위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행위부터,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통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있는 상태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 도박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다. 유기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학대 행위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역시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동물학대 행위를 행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을 자세히 보고 있노라면 형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범죄의 축소 버전임을 알 수 있다. 살인죄, 아동학대 죄, 그리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이나 경범죄를 축소해 놓은 것과 같다. 이렇듯 이미 법은 동물에 대한 다양한 행위들을 불법을 넘어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범죄자로서 “동물학대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그다지 높지 못하다. 그러나 대중의 민감도가 낮다고 하여 그것이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니다.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이다. 우리의 낮은 민감도가 가해자를 범죄자로 부르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낮은 민감도는 실질적 피해자를 외면한다는 문제점도 갖는다. 더 나아가 해당 행위 예방을 위한 현황 파악도 불가능하기에 예방정책을 펼치는 것도 제한적이다.

본 토론에서는 법은 존재하지만 작동하지 않는 동물학대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러한 무관심 속에 진화해 가는 동물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고민해 볼 사항들을 논의 해보도록 한다.

2. 집행되지 않는 동물학대범

특정 행위를 규율하는 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지만 법이 존재한다 하여서 반드시 그 행위들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처벌이 처벌로서 상징적이고 현실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 현실속에서 작동해야한다. 즉, 집행되어야 한다. 누구나 그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고 이를 형사사법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해야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학대와 방임, 유기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목격된다. 유기의 경우는 더욱 빈번하지만 이를 행하는 자들이 행위에 대해 공식적 처벌 받을 것을 두려워한다든지, 행위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라는 비공식적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처벌의 “확신성”이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처벌의 확실성은 신고자와 형사사법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처벌의 확실성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이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를 실질적 “범죄”로 인식하고 수사하여 행위자가 처벌받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법원은 이를 무겁게 선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민감도가 낮기에 신고도 몇몇의 동물 집단 단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범죄 신고도 쉽지 않을뿐더러, 신고 후에 경찰의 미온적 반응에 신고 행위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기도 한다. 경찰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기관 모두가 동물학대에 대한 민감도가 결여되어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이렇게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낮은 민감도는 동물학대 행위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집계를 어렵게 하며, 추적 조사를 어렵게 한다. 과거 미국 역시도 FBI 공식 통계 집계시 동물학대 행위를 “기타”에 분류 했던 것에 대하여 큰 비판이 가해졌고, 50여 개 주 이상이 동물학대 방지법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동물학대 범죄를 “기타”에서 “class A” 등급으로 살인 등의 felony 범죄와 동일한 선상에서 세부적으로 집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동물학대 공간의 확장: 온라인

최근 동물학대는 단순히 가해자가 동물을 죽이거나 괴롭히고 유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러한 행위를 최근 몇 개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동물학대를 예고하고 이를 게시하는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다. 학대 사진이나 영상물이 올라오는 사이트가 이를 금지하거나 검열하지는 않기에 이러한 행위는 반복되고 있다. YouTube가 제시하는 ‘Community Guidelines’의 경우 동물학대 영상은 금지되며 검열대상이다. 이러한 내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물학대 영상이 그대로 검색되면서 해당 플랫폼은 소송을 당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학대 행위를 영상으로 촬영하고 업로드하는 행위가 엄연히 불법행위이나 해당 사이트에는 관련 글과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다. 단순히 가해자 처벌만으로는 근절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즉, 인터넷 플랫폼에도 범죄 행위에 대한 영상을 관리하는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하는 것이다. 해외의 연구들의 경우 동물학대의 목격자는 동물학대와 동물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다는 상관성을 지속적으로 보고해왔다(Gullone, Robertson, 2008). 관련 영상물이 단순히 혐오스럽다는 측면에서 누군가의 행복권을 침해하였다는 것 이상으로 지속적인 학대 영상 노출은 누군가에게 간접 학대이고 이는 동일한 행위에 대한 가해자를 양산해 내는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2021년에 이원욱 의원이 입법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의미가 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있는 현행법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으로서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에 대해서도 플랫폼 제공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4. 가해자 분석과 범죄학적 대응 방법 모색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없다. 미국에서 진행된 동물학대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현황 파악 연구를 인용하면, 동물학대 가해자의 주변과 가정에는 가정폭력이 존재한다는 관련성이 있었다. 동물학대 가해자의 가정에서는 권력(power)을 갖은 자가 권력을 갖지 못한 자에게 폭력을 행사해왔고, 권력이 없는 자는 늘 통제(control)의 대상이 되었다. 때로는 그 대상이 어머니이기도 했고, 어린 자신이기도 했다. 그 안에서 권력을 통해 분노와 스트레스를 표출하는 것이 학습된 자는 자기보다 힘이 없는 대상을 선택하여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게 된다. 더욱이 최근 인터넷에 게시된 온라인 동물학대 행위는 힘없는 고양이를 돌보는 캣맘들을 대상으로 조롱하고 협박하였다는 것이 이 범죄의 속성이 권력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이러한 동물학대 및 게시 행위에 대해서는 비형사사법 기관인 동물 단체가 아니라 범죄 행위를 공식적으로 다루는 형사사법 절차의 기민한 반응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권력의 우월을 느끼고 표현하고 싶은 자에 대해서는 권력의 반응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폭력 범죄의 속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동물학대와 누군가에 대한 괴롭힘은 위험 증후 행동으로서 동시에 발생한다. 약자에 대한 괴롭힘이 범죄가 아니라 장난이라고 생각하거나, “나를 화나게 한 댓가”로서 매우 당연할 수 있다는 생각의 단편적 표출은 사실 그 뒤에 숨겨진 다양한 위험성을 동시에 드러낸다. 그리고 그 위험은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 미래 예측형이기도 하다. 이는 범죄학에서 Akers의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과 Agnew의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과 사회학습이론을 통해 잘 설명된다.

사회학습이론은 친밀한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획득된 불법행위에 대한 정의에 의해서 범죄가 시작된다고 설명한다. 가해자를 둘러싼 환경은 폭력적 행위의 정당성을 학습시켰고, 애착을 갖고 있는 또래 집단이나 온라인 공간에서의 적용으로 행동은 강화된다. 때문에 우리는 동물학대 행위가 범죄임을 가르쳐야 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불승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처벌 기제의 작동을 통해 모방을 방지하도록

록 해야 한다.

이렇듯 동물학대 가해자를 둘러싼 환경과 가해자가 갖고 있는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는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그리고 이 교육은 초등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인 대상 교육까지도 지속되어야 한다.

Agnew의 일반긴장이론은 가해자가 갖게 되는 부정적 감정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식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아무리 다경력 범죄자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 동기에는 부정적 자극의 출현, 긍정적 자극의 소멸, 그리고 목표 달성의 실패와 같은 공통적 특징이 존재한다. 여타 다른 범죄예방 정책이 처벌만을 해결책으로 보지 않듯이 다양한 사회적 긴장 완화 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5. 피해자 회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

범죄란 가해자가 존재하면 피해자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비록 피해자가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로 분류되는 행위도 있지만 그 역시도 피해 자체는 존재한다. 동물학대 행위의 경우에는 피해와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떤 범죄행위 대비 적고 피해자 회복 정책도 존재하지 않는다. 단순히 민사적 방법을 동원해야 할 뿐이다. 그러나 최근 일반적 형사사법 절차는 피해자의 참여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동물학대 행위 역시도 피해자로서 동물, 피해자로서 인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피해를 입은 동물의 치료와 회복을 이를 구조한 당사자나 동물 보호단체가 모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달리 보면 여전히 법은 동물학대를 범죄로 바라보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또한 심지어 동물학대 행위의 피해자로서 인간의 피해에 대해 회복을 염려하지 않는 사회,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한 혐오적 표현을 경험해야 하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도 없는 사회이다.

단순히 동물학대 행위가 미래 인간을 향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는 처벌의 당위를 논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그 학대 행위 자체에 의해 피해를 당한 존재가 있기에 우리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사회적 반응을 고민해 봐야 한다.

6. 마무리

인간에 대한 범죄와 동물에 대한 범죄예방 정책은 그 방향이 다르지도 않고 달라서도 안 된다. 철저히 가해자에 대한 특수억제, 일반인에 갖는 일반억제 그리고 피해자의 회복을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법은 존

재하지만 행위자를 범죄자로 여기지 않고 있다. 낮은 민감도가 문제인 것이고, 이러한 낮은 민감도는 무지에서 시작된다. 사회에서 약자를 돕는 자들을 향해 그들이 싫고 혐오한다는 표현을 당당히 내뱉는 이들의 무식당당한 입장이 아닌 그들의 혐오적 사고와 무지를 승인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범죄자를 엄벌해달라고 한다. 그러나 그 범죄자 한 명을 교도소에 가두어도 범죄는 계속 발생한다. 범죄 해결이 단순히 개인적 수준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미시적, 중시적, 거시적 관점에서 그 현상을 짚고 예방책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 그 어떤 범죄교육과 다름바 없는 교육이 필요하며, 확신성을 높이기 위한 경찰의 민첩한 반응, 그리공식 통계 집계를 통해 동물학대 행위 발견과 집계를 정확히 하고, 추적 조사까지도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동물보호법의 존재로서가 그 역할을 다했다고 봐서는 안된다. 처벌의 확신성과 신속성, 엄격성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학대를 규율하는 법의 그물이 지속적으로 촘촘해 질 수 있도록 관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성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동물보호법을 살아있는 법으로 만드는데 일조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온라인 동물학대의 범행동기적 특성에 따른 사이버 공간 관리의 필요성

이상경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 프로파일러

1. ‘동물학대’ 범주의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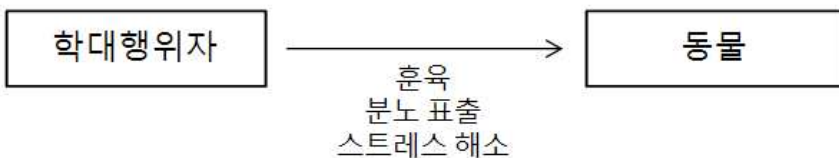
‘동물학대’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아님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서야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다. 지금까지는 학계에서나 실무적으로나 다른 유형의 범죄에 비해 - 특히 대인범죄에 비해 - 큰 관심을 받지 못해 현재 우리가 동물학대 범죄 또는 범죄자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뭉뚱그려 전체 행위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동물학대’라는 범주 안에 존재하는 각기 다른 행위에 대해 구체적·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인 동물학대법과 아동 동물학대법, 적극적 학대와 방임과 같은 수동적 형태의 학대, 애완동물에 대한 학대와 가축에 대한 학대, 동물학대와 그 외 반사회적 행동 등은 서로 다른 심리적 기제에서 발생하는 행동일 수 있다. 오늘 토론의 주제인 온라인 동물학대도 오프라인에서의 동물학대와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고 우리는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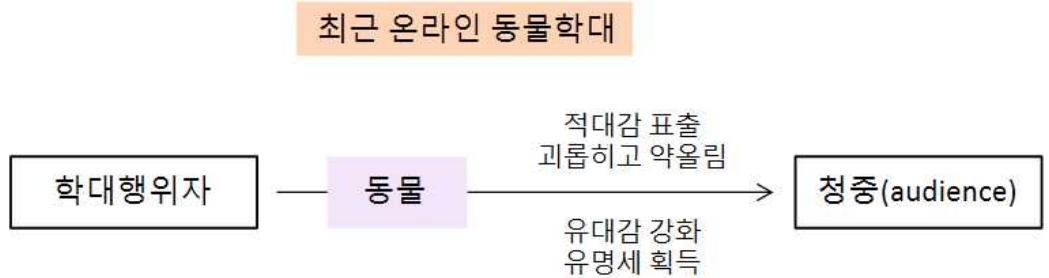
2.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의 특징

본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연구된 내용은 전혀 없다시피 하므로 단언하기 어려우나, 경험칙적으로 볼 때, 온라인 동물학대는 전통적인 동물학대와는 범행동기 및 범죄행동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전통적인 의미의 동물학대는 학대범의 다혈질적 성향, 공감능력 부족, 왜곡된 가치관(예: 동물은 인간의 소유물, 동물은 인간과 같은 고통·감정을 갖지 않는다, 인간은 동물보다 우월한 종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 등), 스트레스 해소 목적 등의 범행동기를 갖는다. 또한, 학대 행위자와 피해동물의 관계성을 보면, 피해동물 자체가 학대 행위의 목표이며 범죄 행동은 직접적으로 대상(타겟)을 향한다. 범행은 습관적 혹은 충동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은밀하게 타인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인 동물학대



이에 반해, 최근 온라인 동물학대는 학대범들이 학대 행위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의 반응을 이끌어내려는 경향을 보인다.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과는 유대감을 강화하고 집단 내 명성을 획득하려 하며, 적대시하는 집단들에는 적대감을 표출하고 약올리거나 괴롭히려 한다. 자신의 학대행위를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될수록, 아이디어가 ‘악명’이 높아질수록 만족감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광고한다.



3. 사이버 공간에서의 동물학대 범죄 방지의 필요성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의 범행장소는 사이버 공간이다. 위와 같은 특징을 고려할 때, 이들은 범행 장소인 사이버 공간이 공개된 곳일수록, 공간의 파급력이 높을수록 학대를 추진할 동력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는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 자체가 범행 장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므로, 이번 법 개정 취지와 같이 관리자의 책임과 감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온라인 동물학대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우리 사회의 신속한 관심을 촉구하고 싶은 또 한 가지 이유는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동물학대 노출과 범행 우려 문제이다. 아래는 작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디지털성범죄 이슈에 관한 기사 제목이다.

- 「디지털 성범죄 특수본 한달... “가해자 73%는 10~20대”」
동아일보 (2020.4.23.)
- 「중·고생들이 ‘디스코드’서 아동 성착취물 13만개 유포...“용돈벌이”」
뉴스1 (2021.4.6.)
-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94명 검거... 10대가 70%」
데일리안 (2021.5.2.)

오늘날의 10~20대들은 소위 ‘디지털 네이티브’다. 보호자들보다 정보통신 이용 기술이 뛰어나 성인들이적절하게 감독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반면, 동조성·피암시

성은 가장 높은 시기로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청소년들의 유해정보 접촉이 심각한 것은 이들이 단순히 해당 정보의 소비자가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해 정보에 참여, 공유, 생산하는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정 행동이 ‘유희’로 여겨질 때 더욱 높는데 최근 온라인 동물학대 사이트에서 고양이나 캣맘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인 동물학대를 가벼운 장난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것으로, 우려되는 현상 중 하나이다.

4. 맺으며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논란이 되는 사이트에 처음으로 접속했다. 혐오 표현이 난무할 뿐 아니라 범죄를 예고하거나 범행 장면을 올리거나, 심지어 수사기관을 비웃는 글이 많았다. 이들의 범행동기가 ‘청중’을 자극하고 반응을 끌어내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이들이 설 수 있는 ‘무대’를 치워야 하지 않을까.

**동물과 사람에게 가하는
가장 저열한 폭력,
온라인 동물학대 엄벌과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 대표

온라인 동물학대범죄는 동물에 대한 극악한 폭력 행위로서도 문제지만, 발달될 정보 통신망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정서적 충격을 가하는 인간에 대한 범죄이기도 하다. 소위 고어 전문방의 고양이 등 학대 행위, 디시인사이드에서의 아기 고양이 학대 사건에 각각 27만, 24만이라는 막대한 숫자의 서명자들이 처벌을 요구하며 참여한 것만 보아도 학대자들이 우리 사회에 가한 폭력의 크기와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학대자들은 배고픈 동물, 자신을 방어할 힘이 없는 어린 동물을 포획해 도망가지 못하게 가둔 채 뜨거운 물을 붓고 칼로 찌르며 산채로 불태우고 그 영상을 정리품인 양 공개하고 퍼뜨리며 유사 학대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여느 정상적인 정서의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연민을 느끼거나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동물들, 보호자 없이 거리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이 학대자들에게는 살해와 고문의 대상이 된다.

시민들이 느끼는 학대자에 대한 분노는 바로 이 지점, 즉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학대에 노출된 동물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 공권력 역시 정작 보호체계 마련에 실패하고 있다는데서 온다. 처음에는 열심히 청와대 청원과 엄벌 요청 서명에 참여했지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거나 검거했다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법적인 정의가 구현되지 못한다는 생각에 더욱 분노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민국 법원은 고양이를 활로 쏘아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공유한 고어전문방 학대자에게조차 결국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검사 구형 징역 3년은 시민들의 일벌백계 바람 속에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았다. 산채로 불태운 고양이로 한국 여론이 비등하던 같은 시기, 영국의 유명한 축구선수 커트 주마(28, 웨스트햄)는 자신의 고양이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가격한 사실이 드러나 소속사측으로부터 4억원의 벌금 징계와 후원사와 손절은 물론 RSPCA도 이 사건을 명백한 학대로 규정 내부적으로 다룰 것임이 알려졌다.

커트 주마가 망신살이 뻗치는 동안, 한국의 온라인 동물학대자는 온라인이 제공하는 ‘익명성’에 기대어 추가학대 범죄를 예고했다. 동물들이 겪는 고통과 공포는 반사회적인 학대자들에게 즐거움이 되고 동물의 고통에 공감하는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마저 이들에게는 악마적 저열한 쾌락과 더 강한 자극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통신망이 이를 무한대로 제공하는 토양이 되고 있다. 이자들은 반사회성향의 범죄자들이 그렇듯 자신의 행위에 엉터리 명분과 정당성을 부여한다. 고양이가 멸종위기종 동물을 죽이는 유해동물이고 소위 캣맘의 먹이 주기 때문에 자신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황당한 주장들은 온라인상에서 고양이와 그들을 보살피는 소위 ‘캣맘’ 혐오의 명분이 되어 동의 받으며 학대의 ‘기술’을 공유하고 서로 학습하고 그 ‘경험’을 독려하며 피해와 위협을 확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홀로 고립되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와 비교할 때 그 위협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 시대 전지구적 상생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절박한 깨달음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약자에 대한 연민, 타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는 자각은 현재와 미래 바로 우리 삶과 인간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일 것이다. 이를 상실한 괴물과도 같은 존재들이 인터넷망에 숨어 사회 안전을 훼손하고 인간의 품위를 훼손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의 본 모습이다.

현재 일부의 시민들이 직접 응징, 청부업자 고용까지 언급하고 많은 분들이 호응하고 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럴까. 그러나 학대자는 이런 분노와 반응을 학대의 보상으로 기대하며 흡수하여 더욱 비뚤어지는 병든 인성의 소유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 인류의 생활은 물리적 생활공간 외에 가상의 공간에도 또 하나의 커다란 세상이 구축되고 있을 정도로 온라인 공간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기만 한다면 해결은 가능하다. 우선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수사력과 양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동물학대 엄벌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물학대 수사력은 미비하기 짝이 없었고 검거된 범인에 대한 처벌도 실망스러운 수준이어서 범죄 억제력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두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온라인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물 학대자는 물론, 이를 공공연히 게시하도록 방치하여 사회와 국민의 피로감을 강요하는 통신망 사업자까지 공범으로 처벌하여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 범죄는 일단 시작되면 그 순간부터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방대책’으로써 국가 통신망을 사용하는 데 따른 책임을 다하도록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법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책임을 부여하는데 그치지 않고 동물학대 영상물 등 법적 저촉 게시물에 대해서는 행위자 수사과 별개로 ‘게시된 사실만으로’도 사업자를 처벌하는 특단의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 자유를 누리는 기술의 시대에 모두가 즐겁고 자유로워야 할 인터넷 공간이 야만적인 동물학대의 온상이 되어도 무기력하게 두고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들이 통신망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우선 이원욱 의원 대표 발의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한다.

법률 개정안 개요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동물학대의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역시 비난가능성 및 그러한 행위가 가져올 사회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동물학대의 사진 또는 영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하게 확산되는 일을 막을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유통방지 대상 정보로서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9제1항제4호 신설).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예방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문

주현경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교수

현행법상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및 이를 촬영한 사진·영상물을 전시·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는 이미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함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금지행위의 예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6조 제1항 제1호)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금지행위의 예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6조 제2항 제1호)

「동물보호법」 제8조 제5항 제1호의 금지행위의 예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6조 제4항 제2호)

상습범 가중 「동물보호법」 제46조 제5항

동물학대범죄 처벌의 타당성

- 형법상 법익론의 관점: 형벌로서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법익)은 동물의 생명권 및 동물 신체의 완전성
- 법익론 외부의 관점: 인간과 동물은 이 세계를 함께 하는 생명체라는 점에서의 연대성(kreatürliche Solidarität)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처벌의 특수성

- 범죄행위의 공개로 인한 모방범죄 확산 위험
- 공개를 위해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행위가 확산되는 학대의 악순환 발생 우려
- 시민의 생명존중 사상에 대한 침해

동물을 대하는 법학의 방향성

- 법학에서는 그동안 동물이 직접적인 법익침해의 대상이 되는 동물학대행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해 왔으나, 사람 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포함하여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2022년 2월 현재 위원회 심사 중임 (의안번호 2112764)
- 법학이 그동안 동물을 객체화해 왔던 시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동물을 물건과 구별되는 생명체로 바라보게 되는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민법 뿐만 아닌 법학의 다른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민법」(안) 제98조의2 (동물의 법적 지위) 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동물학대행위를 대하는 형사법의 방향성 설정

-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의 법정형은 적절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임.
- 법정형의 상향화보다는 선고형의 실질화를 통해 일반예방효과(위협) 및 특별예방효과(재범 방지)를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소율(기소유예), 벌금형 선고 경향(징역형이 거의 선고되지 않음) 등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
- 동물학대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필요

온라인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6월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236)
- 동물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유통방지 대상 정보로 추가하는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신설) 4.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
- 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법의 필요성·목적·적절성

- **입법의 필요성:** 범죄장면을 온라인을 통해 게시하는 행위의 비난가능성, 피해자의 2차 피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확산 방지, 범죄 규제의 확장, 사회윤리
- 헌법 제21조 제4항의 표현의 자유 제한 사유 해당 여부
 - 자신의 동물학대 행위 촬영물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가 기본권 보호영역 내에 있는지 여부: 음란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대상이 됨을 전제로 기본권 제한을 논한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바109,2007헌바49,57,83,129(병합) 전원재판부와의 비교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균형의 측면

- 기존 ‘불법촬영물등’이 성범죄 촬영물 또는 2차 가공물이었다는 점과 비교할 때, 동물학대행위 촬영물이 제4호로 병렬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물학대범죄 촬영물과 성범죄촬영물은 촬영물의 유통이 일으키는 효과 면에서는 차이가 있어 성격이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는 없으나, 현실적 유통현상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동물학대행위 촬영물 역시 유통을 강력하게 금지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제4호로 추가하는데 무리는 없음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어떤 유통방지 업무를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도 제4호를 신설하여 같은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 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입법의 실효성

- “기존에 불법촬영물로 규정된 영상물의 특징값과 신규 업로드되는 영상물의 특징값을 기술적으로 대조”하는 방식의 실효성
- 사전확인작업으로는 이용자가 게시물을 올리는 ‘의도’까지는 확인할 수 없음. 따라서 「동물보호법」 제8조 제5항 제1호의 예외요건(“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에 해당할 경우 등을 기술적으로 걸러낼 수 없어, 이 경우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함.

김미정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 팀장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